

# 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이하 “유료방송사”라 한다)이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PP”라 한다)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채널을 편성하고(이하 “채널제공 계약”이라 한다)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하 “프로그램사용료 계약”이라 한다) 관련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 I 내지 II,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유형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시청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① 위법성 판단시 해당 행위에 의한 공정한 경쟁질서 또는 시청자 이익의 저해 여부와 정도를 고려한다.

② 제1항의 “공정한 경쟁질서”란 PP에 대한 채널제공 여부, 채널번호·티어 등 채널편성의 유·불리, 프로그램사용료 수준 등이 해당 PP의 프로그램 경쟁력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제1항의 “시청자 이익”이란 유료방송서비스의 선택,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 해지 및 A/S 등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약관에 근거하거나 사회상 규상 인정되는 시청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 제2장 불공정 행위의 유형

제3조(채널제공 등에 대한 조건의 제시) ①유료방송사는 PP에게 채널제공 등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채널제공 등을 조건”이란 유료방송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PP에게 보다 유리하게 채널의 제공 여부, 채널번호, 티어,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등이 결정되거나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제1항의 “경제적 이익”에는 현금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물품 및 용역 등의 협찬, 유료방송사 또는 유료방송사의 특수관계인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등도 포함된다.

제4조(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①유료방송사는 프로그램 공급을 제안하거나 이미 제공하고 있는 PP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채널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란 PP와의 채널제공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5조(정당한 사유없는 채널편성 변경)** ① 유료방송사는 PP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편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채널편성의 변경”이란 시청자가 많은 상품에서 송출되던 채널을 시청자가 적은 상품으로 옮기거나 채널번호, 티어 등을 PP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6조(정당한 사유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① 유료방송사는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PP에 대하여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계약조건, 산정범위와 방식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설정·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계약조건”이란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정액제·정률제 등 지급방식, 월·분기·반기 등 지급주기, 지급보류 사유, 연간 계약·다년 계약 등 계약기간 등을 의미한다.

③ 제1항의 “산정 범위와 방식”이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방식이 정률제인 경우 방송수신료수익 등의 모수 및 배분율을 의미한다.

**제7조(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 등)** ① 유료방송사는 PP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채널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설정·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경쟁 사업자”에는 기존 유료방송사 뿐만 아니라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유료방송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포털사업자, OTT·N-스크린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포함된다.

- ③제1항의 “조건”에는 다른 유료방송사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타사와 계약시 커버리지나 MPP의 공급채널 숫자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 제3장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제8조(채널제공 등에 대한 조건의 제시) 유료방송사의 행위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료방송사가 PP에 경제적 이익의 제공여부를 채널제공 등과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다.

1. PP간 차별 : 상대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개별 PP나 새롭게 런칭된 PP(타 유료방송사에는 송출되나 자사에서는 신규 제안한 PP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 PP”라 한다)에 대해서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
2. 경제적 이익의 수준 : 상거래 관행, PP의 규모 및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이익제공을 요구
3. 경제적 이익의 종류 :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전용이 용이한 현금을 요구
4. 경제적 이익의 지급방식 : 계약서 또는 회계장부상 지급명목과 실제 지급용도가 상이하거나, 이면 계약서가 존재

제9조(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①유료방송사의 행위가 제4조제2

항 전단의 “PP와의 채널제공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채널제공 등에 대한 조건의 제시 : 채널제공을 거부당한 PP가 제3조의 채널제공 등에 대한 조건의 제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다만, 유료방송사의 자체 편성기준에 반하여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존 가이드라인 준수 : 채널평가 및 편성절차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위성방송 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의 경우 동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자체 편성기준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명백하게 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3. 재계약 탈락기준 : 해당 PP가 유료방송사의 자체 탈락기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이때 자체 탈락기준은 시청율, 자체제작 비율, HD본방비율이나 초방비율 등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기준에 한한다.
4. PP와 경쟁사간 관계 : 해당 PP가 경쟁 유료방송사와 자회사·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고,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면 계약체결을 거부당할 이유가 없는지 여부
5. 다른 유료방송사에서의 검증 : 해당 PP가 다른 유료방송사에 이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수한 시청률이나 시청자 평가를 받는 등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해당 PP가 신규 PP인 경우에 한한다)

② 유료방송사의 행위가 제4조제2항 후단의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료방송사와 PP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다음 합의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1. PP가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하는 경우
2. PP가 유료방송사에 대해 방송·송출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등 법률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3. 기술적 문제로 단기간 송출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유료방송사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정당한 사유없는 채널편성 변경)** 유료방송사의 행위가 제5조제1항의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커버리지 및 수신료 : 불리한 채널편성 변경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을 커버리지가나 수신료 등으로 적정하게 보전해 주었는지 여부
2. 시청률, 본방비율 등 : 시청률, 본방비율, 투자비 등이 전 계약 대비 명백하게 하락하였는지 여부
3. 정부 정책, 기술적 한계 등 : 정부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주파수 대역 조정에 따른 채널 수 변동 등
4. 해당 유료방송사의 채널편성 정책에 따른 편성 변경의 일관성과 합리성
5.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널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

우

제11조(정당한 사유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유료방송사의 행위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 무상이거나 송출수수료 등 기초비용도 충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프로그램 사용료 결정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 명백하게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허가조건 등의 준수 여부, 시청율, 프로그램 사용료 배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장르 등을 고려할 때 타 PP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 등
2. 지급방식 : 정률제의 경우 모수의 정확성 검증방안이 없거나 이의제기가 불가능한지 여부 등
3. 지급기간 : 월별 지급이 아닌 분기 또는 반기별 지급에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등
4. 지급보류 사유 : 지급보류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요건이 명확한지 여부 등
5. 계약기간 : 연간 계약 대비 지나치게 단기인 계약에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는지 여부 등
6.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범위와 방식 : 모수의 정확성 검증방안 및 이의제

기 절차의 존재, 사업자별 배분을 차이의 일관성과 합리성 등

제12조(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 등) 유료방송사의 행위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료방송사가 PP에 배타적 조건의 수용 여부를 채널 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등과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해당 PP의 경쟁력 : 시청율, 시청자 선호도 등 고려시 시청자의 유료방송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PP인지 여부
2. 계약조건의 수준 : 배타조건부 거래가 의심되는 PP와의 계약조건이 상거래 관행, PP의 규모 등에 비하여 PP에게 유리한지 여부
3. 경쟁사업자와의 경쟁 정도 : 배타조건부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경쟁사업자와 방송권역이 중복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 중인지 여부

## 제4장 보칙

제13조(위반시 효과) 유료방송사의 행위가 제3조 내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 I 내지 II,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적용하여 해당 유료방송사에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6조제4항의 시정명령이나 「방송법」 제85조의2제3항 및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적용 범위)** 유료방송사의 행위가 제3조 내지 제7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 I 내지 II,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